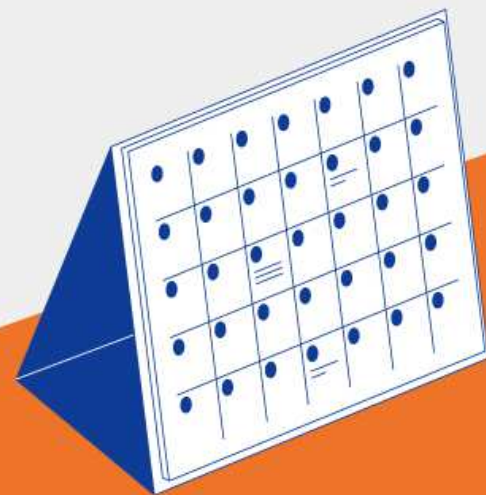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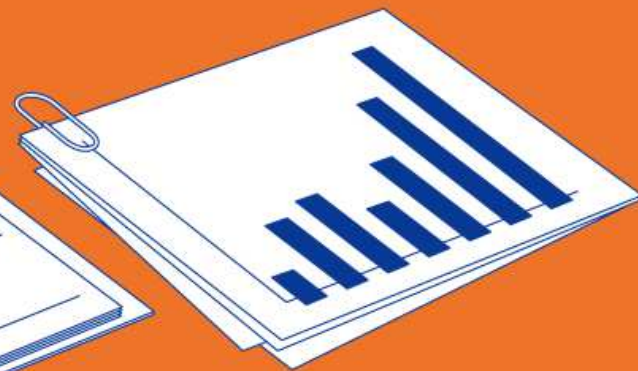


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목차

Contents

1. 세정 · 복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1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1
-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2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

2. 보육

- 2024년 아동발달계좌(CDA) 지원대상 확대 3
- 어린이집 입소 우선 1순위자 확대 3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4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4
- 어린이집 평가제 4
- 첫만남 이용권 5
- 부모급여 지원 5

3. 문화 · 체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6
- 스포츠강좌이용권 6

4. 교통 · 도시

- K패스(K-pass) 7
-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 7

5. 보건 · 환경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8
- 특정 용도의 경유 자동차 신규등록 제한 8

1. 세정·복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공제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07(7%)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07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07 (연세액의 약3.52% 세액공제) - 9월 : 연세액 x 92/365 x 0.07 (연세액의 약1.76%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공제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 연세액 x 335/366 x 0.05(5%) (연세액의 약4.6%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6 x 0.05 (연세액의 약3.8%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6 x 0.05 (연세액의 약2.5% 세액공제) - 9월 : 연세액 x 92/366 x 0.05 (연세액의 약1.26% 세액공제) <p>(2025년 이후 공제율 3%)</p>	「지방세법 시행령」 (`20. 12. 31.)
			세정과 세정팀 (8082-5504)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선정 기준 2,750,358원 	「주거급여법」 (`24. 1. 1.)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 (8082-6562)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중위소득 30% 이하 • 2023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th> <th>지원금액</th> <th>가구</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62만 3천원</td> <td>4인</td> <td>162만 1천원</td> </tr> <tr> <td>2인</td> <td>103만 7천원</td> <td>5인</td> <td>189만 9천원</td> </tr> <tr> <td>3인</td> <td>133만원</td> <td>6인</td> <td>216만 8천원</td> </tr> </tbody> </table> <p>(※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p>	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금액	1인	62만 3천원	4인	162만 1천원	2인	103만 7천원	5인	189만 9천원	3인	133만원	6인	216만 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 중위소득 32% 이하 (※2017년 이후 최초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th> <th>지원금액</th> <th>가구</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71만 3천원</td> <td>4인</td> <td>183만 4천원</td> </tr> <tr> <td>2인</td> <td>117만 8천원</td> <td>5인</td> <td>214만 3천원</td> </tr> <tr> <td>3인</td> <td>150만 9천원</td> <td>6인</td> <td>243만 8천원</td> </tr> </tbody> </table> <p>(※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p>	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금액	1인	71만 3천원	4인	183만 4천원	2인	117만 8천원	5인	214만 3천원	3인	150만 9천원	6인	243만 8천원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3.11.17)</p>
	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금액																															
1인	62만 3천원	4인	162만 1천원																																
2인	103만 7천원	5인	189만 9천원																																
3인	133만원	6인	216만 8천원																																
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금액																																
1인	71만 3천원	4인	183만 4천원																																
2인	117만 8천원	5인	214만 3천원																																
3인	150만 9천원	6인	243만 8천원																																
			<p>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8082-5763)</p>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2023. 1.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2024. 1.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p>「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2조 (‘24. 1. 1)</p>																																
			<p>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8082-5803)</p>																																

2. 보육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2024년 아동발달계좌(CDA)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연령 : 12세~18세 미만 ※ 2024년의 경우 2007년생~2012년생 기초생활수급 요건 : 생계,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연령 : 0세~18세 미만 ※ 2024년의 경우 2007년생~2024년생 기초생활수급 요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복지법」 제43조 (24. 1. 1.)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8082-5812)
어린이집 입소 우선 1순위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 우선순위 1순위자 13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그 외 1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입소 우선 1순위자 14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그 외 12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24. 2. 17.)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 (8082-582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24. 1 1)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8082-580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한도) 연 960시간 이내 - (이용 요금) 기본형 11,0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한도) 연 960시간 이내 - (이용 요금) 기본형 11,630원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24. 1 1)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8082-5803)
어린이집 평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등급제(A-D) 시행 • 4영역 18지표 59항목의 지표 충족/미충족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등급 폐지 및 서술형 평가 결과서 안내 • 6영역 15항목으로 축소 및 적정성 정도 평정 • 부모 참여 자체 평가 도입 	「영유아보육법 제30조」 ('24년 하반기)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 (8082-5823)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첫만남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산가구 대상 - 출산축하 바우처 20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산가구 대상 - 출산축하 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8082-5832)
부모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금액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아동수당법」 제4조 ('24. 1. 1)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8082-5831)

3. 문화·체육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 13,462명 발급 지원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 1인당 1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 13,210명 발급 지원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 1인당 130,000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12. 2. 17.)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8082-5654)
스포츠 강좌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수급자 등 : 546명 (5세~18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포함) · 장애인 : 73명(19세~64세)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금액 : 월 9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수급자 등 : 754명 (5세~18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포함) · 장애인 : 105명(19세~64세)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금액 : 월 100천원(스포츠강좌) 월 110천원(장애인스포츠강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8082-5614)

4. 교통·도시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K패스 (k-p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뜰교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자전거 등 이동거리 비례하여 마일리지 적립하는 방식 - 1회 대중교통 지출금액을 3구간으로 구분 - 월 15~60회(최소 15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금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K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21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 금액의 20~53%를 60회까지 적립하여 지원 - 일반: 적립률 20% 청년(만19~34세): 적립률 30%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립률 53.3% - 이동한 거리나 지출금액대와 상관없이 최소 월 21회 이상 이용 시 환급이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 7. 1.)
			대중교통과 시내버스티م (8082-6628)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2024년 1월 중)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성장관리계획 적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수리점, 공장 등 신규 허가 금지 단, 성장관리계획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 ※ 성장관리계획 인센티브 : 건폐율·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 1. 27.)
			도시과 도시개발팀 (8082-6530)

5. 보건·환경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1.1. ~ 2023.12.31.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제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상담 업무 실시 (☎1533-0639 / 평일 09:00 ~ 18: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 1. 1.)
			위생과 식품안전팀 (8082-5272)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신규등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신규등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신규등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어린이통학버스 - (추가)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기존 등록 차량은 사용 가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4. 1. 1.)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8082-6341)